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법률구조법인, 한국소비자원 감면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취득세 25%, 재산세 25%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몰연장 등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(감면율) 현행과 같음 ※ <u>한국소비자원의 경우 감면 대상 명확화</u>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

□ 개정내용

- 대국민 법률구조사업 및 소비자권익 증진 업무 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인과 한국소비자원의 감면을 3년 연장하되,
- 한국소비자원의 감면 대상의 업무를 포괄적·추상적인 고유업무에서 「소비자기본법」 제35조제1항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*로 구체화

*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제35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

1.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
2. 소비자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·품질·안전성·환경성에 관한 시험·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·분석
3. 소비자의 권리증진·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국제협력
4. 소비자의 권리증진·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·홍보 및 방송사업
5.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
6. 소비자의 권리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·연구
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리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
8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

□ 적용요령

-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(부칙 §1)